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2269번
- 발 의 자 : 이현찬 의원 외 15명
- 발 의 일 : 2021년 4월 1일
- 회 부 일 : 2021년 4월 6일

2. 제안이유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과 「국가정보화 기본법」 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 법령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의 입안 취지에 맞춰 빅데이터등의 수집·활용에 관한 내용 등을 반영하고, 각각의 법률 근거 조항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 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 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사항 반영
 - “데이터기반행정”의 정의를 조례에 명시(안 제2조)

-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지정(안 제6조제2항)
 - 「데이터기반행정법」 제7조에 따라 매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빅데이터의 시행계획” 수립·시행
-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
- 다. 조례에 상위법령 근거 조항을 명시하고, 자구보완 등을 통해 입안기준 확보(안 제1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입법예고 (2021. 4. 9. ~ 4.16.)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가. 조례 개정 취지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20.12.10),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시행(20.12.10)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규정하고, 각각의 법률 근거 조항을 명확하게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법 적합성 및 입법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은 국민 생활전반에 걸쳐 데이터의 활용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자원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법률로서 2020년 6월 9일 제정,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하였음.

〈「데이터기반행정법」 주요 내용〉

- **(목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 **(정의)**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데이터기반행정으로 정의함(제2조제2호).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 데이터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둠(제5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제6조 및 제7조).
- **(데이터의 등록·제공)** 공공기관은 장은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하여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고, 등록하지 아니한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데이터의 이용 목적, 분석 방법 등을 명시한 문서로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에 요청하도록 함(제8조 및 제10조).

- **(데이터의 제공 범위)** 다른 법률 등에서 비밀로 규정하거나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공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은 데이터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 **(민간데이터의 제공 요청 등)**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민간 법인 등에 소관 데이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공공기관 장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관리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메타데이터 등을 종합하여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제16조).
-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연계 및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유형별 저장 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제18조).
- **(데이터분석센터)**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 분석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데이터분석 등을 통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20조).
-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및 평가)**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의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 행정의 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공개하도록 함(제22조).

※ 또한, 최근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 데이터, 5G 등 첨단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초연결·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에 접어들고 있는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과 기술혁신을 위한 규제체계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하였음.

- 서울시의 주요 정책은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며, 서울 시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등 행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확립하기 위해 데이터의 적극 활용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나. 세부내용 검토

1) “데이터기반행정” 정의(안 제2조제6호 신설)

- 안 제2조제6호는 “데이터기반행정”을 정의하고 있는바, 이는 제정된 「데이터기반행정법」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정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용어에 대하여 조례에 그 의미를 명확히 하여 해석상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조례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데이터기반행정은, 예를 들면, 112 신고데이터, 범죄통계 데이터, 유동인구, 신용카드 매출데이터 등을 결합·분석하여 범죄위험도를 예측하여 한정된 치안자원(경찰인력, 순찰차)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범죄 발생 감소에 기여하는 등 데이터를 통해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수행함에 따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행정서비스 질과 행정효율이 더욱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임. 또한, 공공기관이 공동활용 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등록 하도록 하고,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는 공공기관간 제공 요청시 원칙적으로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어 공공기관간 데이터 연계·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임 (행정안전부보도자료, 2020년 5월 20일자, “데이터기반행정법 국회통과, 공공분야 데이터인프라 구축 가속화” 참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가. (생략) 나.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다. (생략) 라.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 ----- 다. (현행과 같음) 라.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또는 정보 2. ~ 5. (생략) <신설>	----- 2. ~ 5. (현행과 같음) 6.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취득 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 분석·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수행 하는 행정을 말한다.
-------------------------------	---

- 다만, 상당수의 가치 있는 데이터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가 미흡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등을 통한 침해 우려가 있는바, 생성하거나 제공받은 데이터로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또는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데이터기반행정법」 제4조제2항에서도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부분의 수집·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2)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지정(안 제6조제2항)

- 안 제6조제2항은 「데이터기반행정법」 제19조¹⁾에 따라 서울시의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스마트도시정책관이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을 임명하여 안정적인 정책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 ②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제공·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3. 제16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

- 다만,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11조2)에 따른 ‘스마트도시책임관’,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3)에 따른 ‘빅데이터책임관’,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도 겸하고 있으므로 그 기능 및 역할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현행	개정안
제6조(빅데이터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생략) ② 빅데이터책임관은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하며,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을 겸한다. ③ (생략)	제6조(빅데이터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공공데이터법」 제12조 -----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③ (현행과 같음)

3) 빅데이터 시행계획(안 제7조제2항)

- 안 제7조제2항은 「데이터기반행정법」 제7조4)에 따라 시장이 매년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2)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11조(스마트도시책임관) ① 시장은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사업의 조정,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1조제2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책임관은 스마트도시정책관이 된다.
- 3)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빅데이터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서울시의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빅데이터등의 수집·분석 및 활용, 제공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도록 빅데이터책임관을 둔다.
② 빅데이터책임관은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하며,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을 겸한다.
- 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7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매년 법 제8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작성지침을 고려한다.	제7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 「공공데이터 법」 제8조에 ----- ----- 「공공데이터법」 제7조제4항----- -----.
② 시장은 매년 빅데이터의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② 시장은 매년 「데이터기반행정법」 제7조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빅데이터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다만, 안 제7조제2항에서는 “빅데이터 시행계획”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에서 정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과 명칭이 상이하나 동 조례는 제정(2016.3.24.)당시부터 빅데이터의 활용과 기반 구축, 서울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을 통한 빅데이터의 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빅데이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선도적인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정책 추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고,

※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수립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2013년 서울시의 “올빼미 버스(심야 버스)”를 들 수 있음. 서울시는 새로운 심야버스 노선을 만들 때 이동통신사 KT와 협력하여 통화기록을 확보하고, 택시 이용 현황을 통해 심야시간 유동 인구 등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버스노선 수립을 통해 시민들의 야간통행 이동비용 및 유류비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등 환경개선 효과가 나타났음(최봉, 『빅데이터 활용과 정보공개의 경제적 효과 분석』, 서울연구원, 2014년 2월, 59-60면 참조).

※ 2019 - 2020 서울시 빅데이터 시행계획 참조

[붙임1]

2019 서울시 빅데이터 시행계획

2019 빅데이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공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민관 데이터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1 개요 및 현황

□ 시행계획 개요

- **근거** :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7조) 매년 시행계획 수립 / (제10조) 빅데이터심의위원회의 수립 심의
- **목적** : 데이터 기반 시정 운영 및 데이터 시민활용도 향상
- 공공데이터 통합 관리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결정 지원
- 대시민 데이터 개방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 데이터 활용수요에 대응

□ 빅데이터 추진 현황

- 데이터 시정 활용 인프라 구축 및 빅데이터 분석 지원
- 부서별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위한 빅데이터 활용시스템 운영(244종데이터, '13년~)
- 형질부서의 합리적 정책추진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지원(45개과제, '13년~)
 - [빅데이터담당관] 심야버스(올빼미버스) 노선 최적화 등 43개 과제 분석
 - [민관 공동연구] 생활인구, 생활금융 분석 2개 과제 수행 (※ 공동연구는 '18 이후)
- 대시민 데이터 개방·활용 인프라 구축
- 공공데이터 개방·공유를 위한 열린데이터 광장 운영(5,245종데이터, '12년~)
- 시민과 함께 도시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빅데이터캠퍼스 운영(516종데이터, '16년~)
※ 화재사건 피해 취약지역 분석 등 613개 과제 수행
- 골목상권 입지분석을 위한 우리마을가게 상권 분석서비스 구축('15년)

[붙임2]

2020 서울시 빅데이터 시행계획

2020 빅데이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공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데이터 과학행정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I. 추진개요

□ 관련근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기본원칙)
-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시행계획 수립 등)

□ 추진배경

-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라, 신기술 창출의 핵심원천으로 데이터가 부상
-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과학적 분석기법의 비약적 발전으로 기존에 분석할 수 없었던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기반 행정이 가능

□ 주요 빅데이터 사업 추진 현황

-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서비스 오픈 : '12.~
- 생활 밀착형 공공데이터를 발굴·개방하여 시민생활 편의증진 및 삶의 질 향상
- 데이터기반 과학행정을 위한 빅데이터 과제분석 : '13.~
- 심야버스(올빼미버스) 등 46개 과제 분석
- 우리마을가게 상권 분석서비스 구축 : '15.~
- 데이터 기반 사회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빅데이터캠퍼스 오픈 : '16.~
- 과학행정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시스템 고도화 오픈 : '17.~
- 시민생활 향상을 위한 공공·민간데이터 융합제작 : '18.~

- 또한, 동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빅데이터(제2조제4호)”는 대량의 데이터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집합과 이로부터 추출한 가치,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과 환경을 말하고 있는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포함한 “빅데이터 시행계획”을 통하여 정책의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과학적인 행정을 수행하는 「데이터기반행정법」의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빅데이터 심의위원회(안 제9조제4항)

- 현행 조례 제9조에서는 ‘빅데이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제2항), 서울시의 공무원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총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며(제3항단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4항).

- 안 제9조제4항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촉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임명직인 서울시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정하도록 해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현행	개정안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법 제8조 및 빅데이터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서울시에 ‘서울특별시 빅데이터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 ③ (생략)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u>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 ⑤ ~ ⑥ (생략)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공공데이터법」 제8조 및 「데이터기반행정부」 제7조와 ----- -----. ② ~ ③ (생략) ④ ----- 위촉한 위원 중에서 <u>호선(互選)한다.</u> ⑤ ~ ⑥ (생략)

○ 빅데이터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2021년 4월 현재)

연번	성명	성별	소속 및 직위	전문분야	비고
1	이○○	남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	임명직
2	여○○	여	서울특별시 교통기획관	교통	임명직
3	엄○○	남	서울특별시 환경에너지기획관	환경	임명직
4	박○○	남	서울특별시 안전총괄관	안전	임명직
5	채○○	여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위촉직
6	강○○	여	이화여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GIS 공간데이터분석	위촉직 (연임)
7	김○○	남	유비케어사외이사	빅데이터	위촉직 (연임)
8	김○○	여	KT빅데이터사업지원단 상무	빅데이터	위촉직 (연임)

9	이○○	남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부교수	도시설계, GIS	위촉직 (연임)
10	이○○	남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	시스템	위촉직
11	김○○	여	동국대 인공지능학과 교수	인공지능	위촉직
12	정○○	여	네이버 데이터사이언스 책임리더	빅데이터	위촉직
13	전○○	남	서울시립대 통계학과 교수	통계	위촉직
14	이○○	여	이화여대 통계학과 부교수	통계	위촉직
15	황○○○	남	한남대 글로벌IT경영학과 교수	정보시스템	위촉직

- 다만,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서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최근 3년간 ‘빅데이터 심의위원회’ 개최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1회 밖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 또한, 2020년 6월 위원회 정비·운영 개선계획⁵⁾에서 최소 연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을 수립·추진 하라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2020년 회의 개최실적이 1회 밖에 되지 않으므로,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4호⁶⁾에

5) 서울특별시, 『2019년도 위원회 운영평가 및 2020년도 위원회 정비·운영 개선계획』, 2020.6., 14면 참조.

6)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위원회의 통합·폐지) 시장 등은 위원회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근거가 소멸된 경우
3.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
4.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
5. 위원회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따라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기보다는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스마트도시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빅데이터 심의위원회 개최실적(2018년부터 2021년 4월까지)

일시	회의개최명 (차수)	참가자	참석률	안건	정책반영내용	온라인 개최여부
'18.3.29	정기회의 (2018-1차)	김○○ 등 9명	60%	○2018 서울시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2018 서울시 빅데이터 시행계획 ○공포 제공대상 이외 공공 데이터 제공거부 적정성 ○데이터 통합 활용 체계 구축 기본계획 ○전문분야별 심의·자문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빅 데이터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구 축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 획 수립 착수	오프라인 개최
'19.4.12	정기회의 (2019-1차)	김○○ 등 8명	53%	○2019 서울시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2019 서울시 빅데이터 시행계획 ○데이터 개방 심의방안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빅 데이터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공공데이터 개방 여부 위 원회 안전 상정 방식 논의	오프라인 개최
'20.11.16	정기회의 (2020-1차)	강○○ 등10명	67%	○2020 서울시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2020 서울시 빅데이터 시행계획 ○데이터주권 확보를 위한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실 증사업 추진 계획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빅 데이터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오프라인 개최

○ 빅데이터 심의위원회 예산 편성 및 집행 상세 내역(2019년-2021년 4월까지)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	결산	집행율	집행내역
2019년	2,400	820	34.2%	○ 안전검토·참석수당 : 820천원
2020년	5,000	1,159	23.2%	○ 안전검토·참석수당 : 800천원 ○ 회의자료 제본 등 : 359천원
2021년	2,500	-	-	○ 미개최

- 또한, 본 개정안의 상위법령은 「데이터기반행정법」 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로 조례상에서 각각의 법률 근거 조항을 명확하게 명시하여(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조례의 적용 및 해석의 혼란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소관 조례의 상위법령 개정 사항에 대하여 적기에 조례가 개정되도록 하는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상위법령	조례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6930호, 일부개정 2020.2.4., 시행 2020.8.5.)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제7423호, 타법개정 · 시행 2019.12.31.)

-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의 개정·시행(20.8.5.)으로 가명처리 정의 신설(제2조제1호의2),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 신설(제28조의2), 개인정보 관련 사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다루도록 개정되었음에도,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는 아직까지도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바, 관련규정의 조속한 개정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제6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시장은 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 파일 운용현황을 행정안전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로 개정 필요

제7조(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 ③ 시장은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 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로 개정 필요

다. 종합의견

-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각각의 법률 근거 조항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법 적합성 및 입법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등 행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확립하기 위해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강조하고, 이러한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데이터기반행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데이터를 행정에 활용해야 하는 공직자의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므로, 데이터기반행정 업무 처리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통해 데이터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도시정책관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전 문 위 원	김 태 한	입법조사관	최 문 숙
---------	-------	-------	-------